- (1) 운반중에 마찰 또는 흔들리거나 굴러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적재하여야 한다.
- (2) 화약류는 방수 또는 내화성이 있는 덮개로 덮어야 한다.
- (3) 화약류는 적재차량 적재정량의 80%에 상당하는 중량을 초과하여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.
- (4) 화약류를 다음 각목에 규정한 물건과 동일한 차량에 함께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.
 - (가)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
 - (나) 외장이 불안전하여 화약류에 마찰 또는 충격을 줄 염려가 있는 물건
 - (다) 철강재, 기계류, 광석류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
 - (라) 독극물, 방사성물질 및 기타 유해성물질
- (5) 종류가 다른 화약류는 관계법령으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차량에 적재할 수 없다.
- (6) 화약류를 차량에 적재 및 하역할 때에는 차량의 엔진을 정지시키고 제동장치를 확실하게 걸어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7) 화약류의 적재 전후에는 그 장소를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.
- (8) 화약류를 적재할 때에는 철물류로 된 신발을 착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4.2.5 운반

- (1) 자동차로 운반할 때에는 운송인은 당해 차량에 안전요원을 탑승시켜야 한다.
- (2) 주차는 위험하지 않은 장소를 선정하여 주차하여야 한다.
- (3) 야간이나 앞을 분간하기 힘든 상태에서 주차하고자 할 때에는 차량의 전·후방 에 적색의 경고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